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34호
2026. 7. 16.(목)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57호) 1

공 고(2)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6-806호) 2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공고 제2026-812호) 7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	
			사 유	고시일
용호동 194	신탄진로756번안 길 477-23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 되는 도로의 안쪽길	2010. 4. 20.
와동 346-17	신탄진로218번길 84-25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 되는 도로	2010. 4. 2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7. 16. ~ 7. 31. (15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 ☎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8. 18.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8. 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8. 31.)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피*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79, 10*호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0 (400,000)	폐문부재
김*철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3*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별첨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김*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88번길 7, 10*호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0	폐문부재

[별첨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박*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2길 6*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폐문부재
이*남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545-*	담배꽂초 불법투기	52,100	이사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812호

- 2026년도 제3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2026년도 제3회 대덕구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m미만 도로 / 토지이음 도시계획(도로 폭 등) 확인
-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의 보도부

나. (제출기한) 2026. 7. 15.(수) ~ 8. 5.(수)까지

다. (제출방법)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go.kr>) 관련 문의: 市 건설도로과(☎ 042-270-5911)

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6년 8월 중(예정)

마.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 각 1부(「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구간 중복여부 사전협의

- 도시철도건설국 트램건설과(☎ 042-270-0473), 트램시스템과(☎ 042-270-0972)

바. (주의 사항)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必(임의 작성 및 확장자 변경 금지)
- 시·종점 상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표기, 현황 사진에 굴착 예정구간 표시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 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만 유효하며, 당해 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심의받아야 함
-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2026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